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9

발의연월일: 2021. 3. 12.

발 의 자:배준영·정찬민·서일준

정경희 · 박찬대 · 이해식

박대출 · 윤재옥 · 박성민

조수진 · 김영식 · 홍문표

김용판 · 권명호 · 박대수

조태용 • 유동수 • 윤영석

김기현 • 박 진 • 윤한홍

이만희 • 이철규 • 신원식

최춘식 • 이주환 • 송석준

정동만 • 정희용 • 서범수

유창현 · 조명희 · 김상훈

추경호 · 양금희 · 김선교

허종식 · 김승수 · 권성동

김은혜 의원(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권투연습'을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을 보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차.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

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및 제17조 등).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의도적으로 협박, 약취, 모욕 등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체·정신·재산의 피해를 끼치거나 상대방이 공포·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책임교사 등의 연수) ① 교육감은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의 학교폭력 관련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연수의 기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보복행위"를 "보복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학내외 전문가에"를 "학내외 전문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항제8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 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 -----사이버폭력-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1의2. (생략)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 1의3. "사이버폭력"이라 인터 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 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 반복적 • 의도적으로 협박, 약 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 취, 모욕 등을 가하거나 특정 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체・

말한다.

2. ~ 5. (생략) <신 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 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정신·재산의 피해를 끼치거 나 상대방이 공포・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책임교사 등의 연수) ① 교육감은 책임교사, 전문상 담교사의 학교폭력 관련 자질 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

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 수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 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 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연수의 기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 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4. (생략)
- 5. <u>학내외 전문가에</u>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 9. (생 략) ② ~ ⑨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u>보복</u>
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
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4. (현행과 같음)
- 5. <u>학내외 전문가, 「대안교육</u> <u>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u> <u>대안교육기관에</u>-----
 - 6. ~ 9. (현행과 같음)
 - ② ~ ⑨ (현행과 같음)
 - 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 항제8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u>⑩</u> ~ <u>⑫</u> (생 략)

① ~ ③ (현행 제10항부터 제 12항까지와 같음)